

연구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본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며 연구의 종류는 지원기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교내연구”라 함은 본교의 학술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말한다.
 - ② “수탁연구”라 함은 정부기관 또는 수탁연구를 본교 총장을 거쳐 지원하는 연구를 말한다.
 - ③ “위탁연구”라 함은 교내연구 또는 수탁연구를 공동연구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 및 연구비의 신청, 집행, 정산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비중앙관리”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본교의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4.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관리기관) ① 연구과제,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등 연구관계관리기관은 교무처가 된다.<개정 2009. 4. 17.>

- ②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과제,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교비연구

제4조 (적용범위) 1. 교내 - 본교전임교원이상

2. 교외 - 아래기관으로부터 본교의 각 기관을 통해 지원되거나 교원 본인이 직접 수령한 모든 연구비에 적용된다.

- ① 정부기관
- ② 정부출연(투자)기관
- ③ 연구지원재단, 기업, 교회등

제5조 (자격) 연구비 신청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타기관 연구비를 받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는 신청할 수 없다.

제6조 (연구과제) 연구과제는 단독 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2인이상의 공동연구도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비 신청)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비 지원 신청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자 선정) 전조의 신청에 의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 5. 23.>

제9조 (연구비의 수령통지 의무)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 (집행계획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바에 따라 “연구비 집행계획서(서식#2)”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의 변경은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비집행계획변경신청서(서식#3)”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연구비 지급 신청서(서식#4)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1차, 2차로 나누어 각각 50%씩 지급하되, 1차분은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2차분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연주발표 완료)후 제19조(연구결과물 평가)에 의거 심사하여 평가등급 B이상은 연구비를 지급하고 C이하는 1차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한다.<개정 2009. 4. 17.>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 5. 23.>

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연구비를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③ 연구자가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소정기한내에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연구 중간 및 결과보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⑤ 연구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⑥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제14조 (연구비 지급제한) ① 연구실적물의 심사평가 결과가 평균 “B”미만인자는 향후 5년간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킨다. (평가구분 A,B,C)

②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구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제15조 (연구계약체결) ① 외부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과의 연구계약 체결은 총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 명의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내용을 “위탁연구계약체결통지서(서식#5)”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제16조 (연구기관 및 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저술인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간 등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연구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서식#6)”를 제출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변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중간보고) 연구교원은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저술인 경우 1년 이내에 “연구과제 중간보고서(서식#7)”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결과물 제출) ① 연구결과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쇄본 또는 단행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연구결과물 평가) ① “연구결과 보고서(서식#8)” 제출 시 제출한 연구결과물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 B, C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17., 2011. 5. 23.>

1. 논문: 논문게재지 평가. 단, 학진등재(후보)지에 실린 결과물은 평가없이 A를 부여한다.

2. 저술: 분류 및 규격, ISBN, 출판부수, 판매여부, 논문형식 준수여부, 출판서적의 질, 출판사 인지도 등

② 연구결과물 평가보고서는 (서식#13)과 같다.<개정 2009. 4. 17.>

③ 연구결과가 평균 “B”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비 지원의 명시) 제11조의 지침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논문(저서)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시 “이 논문(저서)은 0000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저서)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학과연구소 지원 연구비) ① 본교 학과 연구소에 학술논문집 인쇄, 학술세미나 개최등의 학술지원을 위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업적평가위원회는 매학년도 초 전년도 연구소 실적물을 심사하여 연구소별 지원비를 결정한다.

③ 각 연구소는 매년말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출간격려비 및 예술활동지원비) 전임교원이상이 학술저서, 대학교재, 순수학술분야의 번역서 등을 단독으로 혹은 공저로 출간할 경우 출간 격려금을 지원한다. 교회음악과와 실용음악과에 대하여는 예술활동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7.] <개정 2013. 3. 1.>

제23조 (출간 및 예술활동 지원내용) 지원 기준액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B등급이상일 경우 개인별 연간지원총액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교내 및 교외에서 지원받은 연구물(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4. 17.] <개정 2013. 3. 1.>

제24조 (출간격려비 지원신청) 지원신청방법은 연구결과물이 출판(방송, 인쇄)된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7.]

1. 출간서적 1부.
2. 출간격려비 지원신청서 (서식#14)

제25조 (논문게재료) 전임교원이 우수한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등재지(또는 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09. 4. 17.]

제26조 (국제학술지) 국제학술지라 함은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내국인이 심사위원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어 국제학술지를 말한다. <신설 2009. 4. 17., 개정 2011. 5. 23.>

제27조 (논문게재료 지원내용) ① 국제전문학술지 및 학진등재지(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의 지원금액은 개인별 연간지원 총액 범위내에서 별표2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교내 및 교외에서 지원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1.>

② 학진등재지(후보지)지원은 연간 3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0. 9. 29.>

[본조 신설 2009. 4. 17.]

제28조 (논문게재료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서식#15)를 작성하여 등록비등 실 영수증과 함께 게재된 별쇄본 1부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한다. [신설 2009. 4. 17.]

제2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전임교원 이상이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 [신설 2009. 4. 17.]

제30조 (학술대회 참가지원내용) 학술대회참가 지원내용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9. 4. 17.]

제31조 (학술대회 참가지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제한한다.

1. 학술대회참가 지원이 국내외를 포함 하여 연 2회를 초과 할 경우. 단, 논문발표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9. 29., 2013. 3. 1.>
2. 참가경비를 지원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참가하지 않은 교원
3. 교내외 학술지원을 받은 과제

② 이중으로 지급된 연구비 지원일 경우 학술대회 논문발표자로 지원받은 논문은 논문게재 지원비를 신청 시 총금액 중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9. 4. 17.]

제32조 (학술대회참가지원신청) 학술대회참가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서(서식#16)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신설 2009. 4. 17.]

제33조 (학술대회참가보고) 학술대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서식#17)과 함께 학술대회 순서지 또는 발표논문을 관리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신설 2009. 4. 17.]

제34조 (학술대회의 본교 개최경비 지원)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대하여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7.] <개정 2013. 3. 1.>

제35조 (학술대회개최 지원내용) 학술대회개최 지원내용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09. 4. 17.]

제36조 (학술대회개최 지원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 한다.

1. 특정인 중심의 사조직 성격이 강한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2. 학내 행사 성격의 학술대회
3. 학술대회 개최경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임교원이 유치하는 학술대회

[본조신설 2009. 4. 17.]

제37조 (학술대회개최 지원신청) 학술대회개최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개최지원신청서(서식#18)와 학술대회 개최 계획서(서식#19)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신설 2009. 4. 17.]

제38조 (학술대회개최보고) 학술대회개최 지원을 받은 자는 학술대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학술대회 개최 결과보고서(서식#20)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 4. 17.]

제 3 장 연구비의 관리

제39조 (중앙관리) ① 본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를 한다.

② 연구비는 중앙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는 연구비의 예산 및 지급관리, 경리부서에서는 입,출금, 예탁 등 일반회계를 담당한다.

③ 연구비의 모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중앙관리계좌를 통하여 입금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연구비입금 등)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수령할 때,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 연구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1조 (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령보고된 연구비는 본교 연구비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간접연구경비관리

- 제43조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대상은 본교 교원이 지급받은 모든 연구비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연구비, 공동연구과제로서 외부 연구자에게 해당되는 연구비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 총액의 5%를 징수한다.
- ③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연구간접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 ④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한다.
- ⑤ 관리기관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 결의서(서식#9)”에 의거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징수율에 따라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 ⑥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시기는 연구비가 입금될 때 마다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징수된 간접연구경비는 금융기관의 간접연구경비 계좌에 불입한다.
- ⑧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통보서(서식#10)”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 (간접연구경비의 납부)**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간접연구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5조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1. 간접연구경비는 다음각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 ① 본교 교원의 연구능력향상을 위한 제반 경비
- ②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 경비
- ③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 ④ 기타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경비
2. 간접연구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3. 당회계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46조 (간접연구경비의 회계)** ①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 ②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예산안(서식#10)을 편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2월말까지 확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연구경비 결산 보고서(서식#11)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47조 (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간접연구경비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교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연구관계 위원회

제48조 (위원회의 설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5. 23.>

제49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50조 (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운영 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51조 (세칙) 기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지침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지침은 201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지침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간 및 예술활동 지원기준 표

분류	구분	기준액	지급기준1	지급기준2
저서	전문학술서적 저서 (교과서포함)	200만원	1인연구: 100%	연구결과물 평가 결과 에 따라 지급
			2인공동연구: 70%	
			3인공동연구: 50%	
			4인공동연구: 30%	
	전문학술서적 편저 또는 번역서 (교과서포함)	100만원	1인연구: 100%	
			2인공동연구: 70%	
			3인공동연구: 50%	
			4인공동연구: 30%	
	일반서적 저서 (교양 및 기타)	100만원	1인연구: 100%	
			2인공동연구: 70%	
			3인공동연구: 50%	
			4인공동연구: 30%	
일반서적 편저 또는 번역서 (교양 및 기타)	50만원	1인연구: 100%		
		2인공동연구: 70%		
		3인공동연구: 50%		
		4인공동연구: 30%		
피아노 성악 지휘	국내외 A급 전문연주회장 (독창,독주,단독지휘)	200만원	① 단독공연 및 주역 100%, ② 연주시간과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③ 작곡은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0점 이상: 100% 85점 이상: 90% 80점 이상: 80%
	국내외 B급 전문연주회장 (독창,독주,단독지휘)	100만원		
	국내외 대학강당 및 교회 (독창,독주,단독지휘)	50만원		
오르간	국내외 A급 전문연주회장 (독주회)	200만원		
	국내외 B급 전문연주회장 (독주회)	100만원		
	국내외 대학 및 교회 (독주회)	50만원		
작곡	오페라, 협주곡, 관현악곡 등 (20분기준)	200만원		
	합창곡, 독창/독주곡, 실내악곡, 창작-가곡집(50쪽이상) 등 (10분기준)	100만원		
	합창곡, 독창곡 등 소품(3곡)	50만원		
실용 음악	국내외 뮤직 페스티벌 및 대형콘서트(1000명이 상)/ 정규음반	200만원	연주시간과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연구결과물 평가 결과 에 따라 지급 90점 이상: 100%

	공중파TV(KBS, MBC, SBS, EBS)공연 및 프로그램/ 싱글음반	100만원		85점 이상: 90% 80점 이상: 80%
	케이블TV 공연 및 프로그램, 콘서트(400명이상)	50만원		
방송	①공중파 TV (KBS,MBC,SBS,EBS)	30만원		1년에 3회까지 지원
	②케이블 방송	20만원		
중앙 일간지	① 중앙일간지(1,000자 또는 200자 원고지 5매이상)	20만원		
	② 중앙일간지 3단 이상의 기사	20만원		
	③ 중앙일간지에 서울신대교수로서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된 경우	10만원		

* 5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 기준액의 1/n 지급

【별표2】 논문게재료 지원 기준표

구분	지원기준
국제전문 학술지	1. 1인 단독연구논문:200만원 2. 2인 이상 공동연구논문:80만원
학진등재 지(후보지)	1. 1인 단독연구논문: 100만원 2. 2인 이상 공동연구논문: 40만원

【별표3】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구분	지원기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규모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회원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 회당 10만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회당 8만원)씩 지원한다. - 전국규모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할 경우 : 편당 15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전국규모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좌장, 논평자, 토론자 또는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 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회원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 회당 30만원씩 지원한다. - 20개국 이상 혹은 회원수 5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논문발표자가 10명 이상인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항공료 50%지원 외 지역별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미 및 유럽지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지역 : 70만원 2) 미주 : 50만원 3) 아시아 : 30만원 - 20개국 미만 10개국 이상 혹은 회원수 500명 미만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항공료 30%지원 외 지역별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미 및 유럽지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지역 : 70만원 2) 미주 : 50만원 3) 아시아 : 30만원 - 10개국 미만 혹은 회원수 100명 이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작은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항공료 20%지원 외 지역별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미 및 유럽지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지역 : 70만원 2) 미주 : 50만원 3) 아시아 : 30만원

【별표4】 학회개최 지원 기준 표 <개정 2013. 3. 1.>

구분	지급액	비고
국제학술대회	1백만원 이내	
전국규모의 학회 주관 국내 학술대회로서 참여자가 50명 이상인 학술대회	50만원 이내	
전국규모의 학회 주관 국내 학술대회로서 참여자가 50명 미만인 학술대회	30만원 이내	

【서식#1】

연구비 지원신청서

성 명		직 급		학 과	
연구비지원 기관명					
연구참여자	단독연구(), 공동연구(), 단독연주(), 공동연주()				
	공동연구시참여자 명단				
	보조연구원이 필요시 명단				
연구과제명					
연구(주)기관					
연구비총액					
연구개요					
위와 같이 연구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년 월 일 (인)					

【서식#2】

연구비 집행 계획서

성명		직급		학과	
연구비지원 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항목별예산					
항목	집행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간접연구경비					
인건비					
재료구입비					
참고문헌구입 비					
인쇄비					
교통비					
회의비					
활동비					
기타					
총계					
위와 같이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 청 인 년 월 일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연구비 집행 변경 신청서

성명		직급		학과	
연구비지원 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집행계획변경내역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변경사유	비고
간접연구경비					
인건비					
재료구입비					
참고문헌구입비					
인쇄비					
교통비					
회의비					
활동비					
기타					
총계					
위와 같이 연구비 집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연구비 지급 신청서

성명	직급	학과	
연구비지원 기관명			
연구참여자	단독연구(), 공동연구(), 단독연주(), 공동연주(),		
	공동연구시참여자 명단		
	보조연구원이 필요시 명단		
연구과제명			
연구(주)기간			
연구비총액			
입금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	집행계획서 사본 1부. 끝.		
<p>위와 같이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인)</p>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

위탁연구계약체결 통지서

성명		직급		학과	
위탁연구 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연구비 지급내역					
위탁연구계약 체결자명					
특이사항					

위와 같이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연구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성명		직급		학과	
당초연구계획:					
변경사항:					
변경사유:					
경비내역: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9】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징수 결의서

성명		직급		학과				
연구비지원 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 경비 징수내역								
연구비 입금	기입 금액		금회입 금액		입금 일자		누계 입금액	
연구간접 경비징수	기징 수액		금회징 수액		징수 일자		누계 징수액	
징수율	기징 수율		금회율				누계징 수율	
위와 같이 연구비 입금사항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0】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징수내역 통보서

성명		직급		학과				
연구비지원 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연구비 입금 및 간접 연구 경비 징수 내역								
연구비 입금사항	기입 금액		입금 일자		입금 일자		누계 입금액	
간접연구 경비 징수사항	기징 수액		징수 일자		징수 금액		누계 징수액	
<p>위와 같이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p>								

【서식#11】

간접연구경비 예산안(세입·세출)

1.세입예산

예산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계		

2.세출예산

예산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계		

위와 같이 관리기관의 세입·세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장 (인)

【서식#12】

간접연구경비 결산보고서(세입·세출)

1.세입

예산항목	예산액	세입액	증감	비고
계				

2.세출

예산항목	예산액	세입액	증감	비고
계				

위와 같이 관리기관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장 (인)

【서식#13-1】

연구결과물(저술) 평가 보고서

성 명		직 급		소 속	
제 목					
연구형태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술서적 저서(교과서포함)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술서적 편저 또는 번역서(교과서포함) <input type="checkbox"/> 일반서적 저서(교양 및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반서적 편저 또는 번역서(교양 및 기타)				
참 여 자	<input type="checkbox"/> 단독연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		
	공동연구시 참여자 명단				
ISBN		출판부수		판매여부	
연구결과물 평가(저술)					
출판 부수		A	B	C	
		20-18	17-16	15이하	
저술 분량		A	B	C	
		20-18	17-16	15이하	
주제 및 저술 목적의 완성도		A	B	C	
		40-36	35-32	31이하	
편집의 완성도 (디자인, 품격 외)		A	B	C	
		10-9	8	7이하	
출판사의 인지도		A	B	C	
		10-9	8	7이하	
<small>(전수를 직접 기재해주세요)</small>					
심사자 의견					
위와 같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 평균 90이상 A, 80이상 B, 70이상 C

【서식#13-2】

연구결과물(교회음악) 평가 보고서

성명		직급		소속	
제목					
연구형태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성악, 지휘 <input type="checkbox"/> 오르간 <input type="checkbox"/> 작곡				
연구결과물 평가(피아노, 성악, 지휘)					
연주회장 등급		국내외 연주회장 (A등급)	국내외 연주회장 (B등급)	지방연주회장 및 대학강당	교회에서의 연주
		40	35	30	20
연주 형태 및 시간		독주, 독창, 단독지휘	2인 이상 연주		기타 (반주, 합창, 공동지휘)
			30분(50%)이상	30분(50%)이하	
		30	25	20	15
예술성		30	25	20	15
연구결과물 평가(오르간)					
연주회장 등급		국내외 연주회장 (35스탑이상)	국내외 연주회장 (25스탑이상)		국내외 대학 및 교회 (25스탑미만)
		40	35		20
연주 형태 및 시간		독주	2인 이상 연주		기타
			30분(50%)이상	30분(50%)이하	
		30	25	20	15
예술성		30	25	20	15
연구결과물 평가(작곡)					
연주형태		오페라, 오라토리오, 관현악곡, 협주곡, 칸타타	실내악곡, 규모가 큰 합창곡	독창곡, 독주곡(소품)	
		40	35	20	
분량		30분 기준	10분 기준	5분 기준	기타
		30	25	20	15
예술성		30	25	20	15
	(전수를 직접 기재해주세요)				
심사자 의견					
위와 같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 평균 90이상 A, 80이상 B, 70이상 C

출간 및 예술활동 지원 신청서

결 재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신 청 자	학 과	성 명		
신 청 종 류	저 술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술서적 저서(교과서포함)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술서적 편저 또는 번역서(교과서포함) <input type="checkbox"/> 일반서적 저서(교양 및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반서적 편저 또는 번역서(교양 및 기타)		
		※ 이미 발표 또는 기재된 내용이 신규 출간에 포함된 경우 중복 범위를 기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30% 미만 <input type="checkbox"/> 30 - 70% <input type="checkbox"/> 70% 이상	
	교회음악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성악, 오르간	<input type="checkbox"/> 지휘	<input type="checkbox"/> 작곡
	실용음악	<input type="checkbox"/> 대중매체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음반
제 목				
출판부수 (저술의 경우에 기재)				
지원금액				
입 금 처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			
교내·외에서 동일한 연구(예술활동)에 대하여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u>아니오</u> ※ 교내 및 교외에서 지원받은 연구물 또는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출간격려비와 예술활동 지원비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저(역)서 출간 및 예술활동 지원을 신청합니다. 불 임 : 증빙자료(연구물, 공연순서지/팸플릿, 음반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 청 인 : (인) </div>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5】

논문게재 지원 신청서

결 재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연구책임자	학 과	성 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게재학술지	학술지명								
	발 행 처								
	발행번호	VOL. NO.	발 행 일 자						
	게재면수	pp. -- pp 까지							
	KRI입력여부	<input type="checkbox"/> 입력 완료							
지원금액	만원								
<p>교내·외에서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u>아니오</u></p> <p>※ 교내 및 교외에서 지원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출간격려비와 예술활동 지원비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p>									
<p>위와 같이 외국(국내전국규모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p> <p>붙 임 : 1. 논문 별쇄본 또는 논문게재 학술지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하단 빈칸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금회</td> <td>집행누계 (금회포함)</td> <td>연간한도액</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금회	집행누계 (금회포함)	연간한도액			
금회	집행누계 (금회포함)	연간한도액							

*KRI입력 : www.kri.go.kr/stu

【서식#16-1】

발표예정 논문 (해당자에 한함)

논문 제목	국문		
	영문		
본인의 역할	책임 ()	공동 ()	
발표예정 논문 요약			

【서식#18】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 신청서

결 재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학술대회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학회)						
본교유치대표자	성명		직급		학과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예정자						
지원금액						
입금처	은행			예금주명 :		
	계좌번호					
<p>위와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개최 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1. 학술대회 개최계획서 2부 2.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예산계획서 포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본교 대표자 (인)</p> <p>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p>						

【서식#19】

학술대회 개최 계획서

1. 개최 목적 및 필요성
2. 대회주제명 및 일정별 세부계획
3. 학술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

